

열람

特許管理에 있어서 特許情報의 活用

金 尤 培*

1. 企業에 있어서의 特許權利 管理

1.1 特許出願管理

企業은 自體內에서 研究開發한 새 技術과 이에 부수되는 새로운 Model 및 Design을 特許, 實用新案 또는 意匠으로 出願할 필요가 있으며 新製品開發과 관련된 새 商品의 이름은 商標로 出願하여 獨占權을 얻어야 하는데 새로운 着想이나 考案을 特許權利化하는 일련의 과정을 出願이라 한다.

特許出願管理를 함에 있어서는 우선 出願의 대상을 選別하여 定할 필요가 있는데 이때에는 出願의 대상이 되는 着想이나 考案이 企業의 業務와 어떤 관련이 있으며 그 得失이 장래 企業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檢討하는 戰略的分析이 先行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새로운 發明이라 하여도 모두 特許가 되는 것은 아니고 特許法은 새로운 發明中 特許를 받을 수 있는 發明을 구체적으로 明示하고 있는데 우선 發明을 「自然法則을 利用한 技術的 思想의 創作으로서 高度의 것」이라 定義(特許法 第5條)하고 있으며 發明이란,

- 1) 創作 즉 獨創的 思想
- 2) 自然法則을 利用한 것
- 3) 技術的인 것 즉 技術的 效果를 내는 것
- 4) 高度의 것 즉 水準높은 創作일 것
- 5) 이러한 發明이 特許를 받을 수 있기 위해서

는 產業에 利用할 수 있어야 하고 新規性 및 進歩性을 갖추고 또 不特許事由에도 해당되지 않아야 함은 물론이다.

新規性(後述함)이라 함은 發明이 出願前에 알려진 事實이 없는 것을 말하며 新規性이 상실되면 特許要件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認定되어 拒絶된다.

한편 進歩性이라 함은 技術의 非容易性 즉 이미 알려진 技術로부터 얼마만큼 進步發展했느냐에 관한 것으로 「特許出願前에 그 發明이 屬하는 技術의 分野에서 通常의 知識을 가진 者가 新規性喪失事由에 해당된 사실로부터容易하게 發明할 수 있는 것일 때에는 그 發明은 新規性喪失事由에 不拘하고 特許를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어 進歩性을 認定받지 못하는 것은 特許를 받을 수 없다.

다음의 不特許事由에 해당되는 發明은 特許를 받을 수 없는데

- 1) 飲食物 또는 嗜好物의 發明
- 2) 醫藥 또는 2가지 以上의 醫藥을 混合하여 1가지의 醫藥을 調劑하는 方法의 發明
- 3) 化學方法에 의하여 製造될 수 있는 物質의 發明
- 4) 原子核變換方法에 의하여 製造될 수 있는 物質의 發明
- 5) 物質自體가 지니는 性質에 따르는 用途의 發明
- 6) 公共의 秩序 또는 善良한 風俗을 문란하게하거나 公衆의 衛生을 害할 念慮가 있는 發明 등이 이에 屬하며 한편으로,

*辨理士

1) 未完成狀態의 發明

2) 理論上으로 實施不可能하여 所期의 目的을 達成할 수 없는 發明 등에 대해서도 特許를 許與해 주지 않는데 이와 같은 特許를 받을 수 있는 發明은 新規性과 進步性이 있고 그 内容이 現實社會에서 實施可能하며 또한 自然法則을 利用한 技術的 思想의 創作으로서 水準이 높고 또 產業에 利用할 수 있되 이것이 國家產業政策에 反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므로 企業가 特許出願管理를 함에 있어서는 經濟性이라든가 하는 事業의 인 要因外에 새로운 創作物이라도 出願을 하면 特許될 수 있는 可能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미리 檢討하는 特許性判斷이 前提되어야 하기 때문에 特許出願管理는 特許性을 判斷하는 문제로부터 시작된다 하여도 과언은 아닌 것이다.

1.2 特許登錄管理

特許 등은 工業所有權은 產業的 無體財產權으로서 企業가 所有하고 있는 다른 財產과 마찬가지로 財產權으로 취급管理해야 한다.

工业所有權은 無體 財產權이기 때문에 一定한 節次를 跟아 特許廳의 特許登錄原簿에 登錄認定되어야만 비로소 權利가 形成되는 것이며 이는 不動產에 있어서의 登記와 類似한 點이 있다.

出願한 發明이 出願公告된 후 異議申請이 없거나 異議申請이 있어도 異議申請의 理由가 成立되지 않은 때에 그 出願은 特許查定되어 비로소 特許登錄을 할 수 있는데, 登錄料(特許料)를 納付하고 特許登錄原簿에 登載하는 일련의 과정을 登錄이라 일컫는다.

1.3 特許權 事後管理

特許權은 登錄認定以後 상황에 따라 登錄事項이 변경될 수 있고 또 權利의 存否에 영향이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工業所有權을 다룸에 있어서는 살아있는 生物를 다루듯 조심스럽게 管理할 必要가 있다.

한편 特許權을 行使함에 있어서는 그 請求範圍에 기재된 事項에 의하되 特許制度는 國家產業發達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채택된 것으로 特許

權者의 保護에 앞서 우선 國家利益이나 公益을 두터이 보호하고 있어서 特許權의 效力은

1) 研究 또는 試驗을 하기 위해서 特許發明을 實施하는 경우

2) 國內를 通過하는데 不過한 運輸用 機械, 器具 또는 그 裝置

3) 特許出願當時부터 國내에 있었던 物件 등에는 미치지 않도록 되어 있어 特許權을 行使함에는 위와 같은 公益 또는 國政產業政策과 相馳되지 않도록 行使해야 되며, 特許權은 그 存續期間동안 獨占排他的인 權利가 부여되며 그後에 特許權이 消滅되면 누구나 이를 實施할 수 있도록 社會一般에 開放되는데 特許權이 消滅되는 경우는

1) 特許權存續期間이 滿了된 때

2) 特許料를 納付하지 않은 때

3) 相續人이 없이 特許權者가 死亡한 때

4) 特許權者가 特許權을 抛棄한 때

5) 特許가 取消된 때

6) 特許가 無效로 된 때로서

일단 消滅되면 누구나 아무런 제약없이 實施할 수 있도록 社會一般에 開放된다.

한편 特許權者는 特許權存續期間中에 效率의 인 特許管理를 함으로써 發明을 公開하는 代價로 特許權者가 國家로부터 부여받은 獨占權을 最大限으로 活用, 이를테면 技術販賣를 하여 收益을 올려야 하는데 特許權者는 자신이 직접 特許發明을 實施하거나 아니면 第3者에게相當한 實施料(Royalty)를 받고 實施權을 許與해 줄 수 있다. 또 때에 따라서는 事業(技術)의 一部와 함께 또는 단독으로 特許發明을 他人에게 讓渡할 수 있다.

이외에도 特許權者는 自身의 特許權에 대하여 法的 對抗措置를 取하는 者가 있는 경우 이들을 대상으로 特許審判(無效審判이나 權利範圍確認審判 등 各種 審判)을 수행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特許審判은 特許管理의 精髓이므로 特許審判에 있어서의 勝敗는 企業의 運命을 左右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留意할 必要가 있다.

特許權者는 他人이 特許權을 侵害하고 있거나 않은지 不斷히 監視해야 하고 類似한 發明이 他人에 의해서 特許(또는 出願公告)되는지도 아울

러 監視할 필요가 있고 特許權自体의 表示管理에도 신경을 써서 特許原簿上의 기재사항과 實際가 항상同一하도록 管理維持해야 한다.

2. 企業에 있어서의 特許情報管理

2.1 特許情報管理의 必要性

企業이 特許를 對市場戰略武器로 利用하기 위해서는 新製品開發에 必要한 國內外의 關聯技術文獻을 調査하여 研究開發部署에 提供, 配布하여야 하기 때문에 企業이 앞으로 研究開發함이 바람직한 新製品과 同一 또는 類似한 品目에 대한 諸情報를 蒐集하여 研究者 또는 實務技術陳에게 提供하고 研究者나 實務技術陳으로 하여금 公知技術의 重復研究에 따르는 不必要한 努力과 費用의 過多支出을 抑制하게 하여 國內外 同種業界의 新技術을 隨時로入手하여 新製品開發에 利用할 수 있게 하고 同業 他社에서 現在 어여한 技術에 대한 權利를 確保 또는 申請中에 있는지의 與否 등 業界의 新製品開發의 趨勢와 動向을 迅速 正確히 把握할 수 있고 自社開發可能品目에 대한 他人의 特許權을 讓與(專用實施權이나 通常實施權設定) 받든가 아니면 他人의 特許內容을 利用 改良하여 더 좋은 新製品을 開發하도록 하는데 有用한 情報를 提供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利點이 있으며, 特許情報管理를 함으로써 特許公報監視業務를 不斷히 할 수 있어 特許出願을 위한 事前調查와 흡결있는 他人의 特許出願에 대한 異議申請 및 關係審判資料를入手할 수 있고 自社의 特許權과 他人의 特許權과의 關係에 있어서 權利의 相互抵觸을避할 수 있는 基礎資料를 提供해 준다.

2.2 特許情報管理의 利點

特許情報管理를 위한 情報蒐集源이 되는 特許公報類에는 國內外의 수많은 研究者, 發明者, 科學者, 技術者, 企業人們이 각各自己나름대로의 職務와 專攻에 따른 온갖 새로운 技術的創造物을 紙上에 公表하는 知識의 廣場으로써 特許情報源이 되는 特許公報類야말로 人類의 文明觀을

未來指向의in 世界로 引導하고 企業을 案內, 發展시켜 주어 着想과 技術的 知識을 交流시켜 주는 「아이디어의 交叉路」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企業은 特許情報管理活動을 通하여 항상 特許情報源인 特許公報類에 接하게 될 수 있을 것이므로 언제나 새로운 着想과 새로운 技術的 知識으로 改造내지 創造해 낼 수 있는 動機를 自體에서 誘發시켜 주게 되므로 特許情報管理活動을 계울리 하지 않는 企業은 他企業을 누르고 市場競爭에서 一次的인 勝利를 거둘 수 있게 되는 것이다.

2.3 特許情報의 企業活動에의 利用

特許情報은 企業의 經營活動上

- 1) 新製品開發 및 새 技術利用
- 2) 特許出願
- 3) 技術發展趨勢展望
- 4) 公知·公用技術이 他人에 의하여 特許武器化되는 것에 대한牽制
- 5) 技術導入 및 技術販賣와 企業의 國際競爭力を 強化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3. 特許出願에 있어서 特許情報의 活用

特許出願을 함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해당 發明에 대한 特許性을 判斷해야 하며 이중 新規性과 進歩性 判斷은 特許情報를 調査함으로써 얻을 수 있어 特許出願에 앞서 特許情報調査를 하면 出願經濟上 有利함은 너무나 당연하다.

3.1 新規性 調査

新規성이 상실된 出願은 特許될 수 없는데 特許法上 新規性喪失이라 하면 特許出願前 國內에서 公知·公用된 것 또는 國內外에서 頒布된 刊行物에 기재된 것을 일컬으며 新規성이 상실되는 것은 다음의 3가지 類型으로 나누어 考察할 수 있는데

- 1) 國內公知·公用

이는 特許出願前에 發明의 内容이 公知되었거나 그와 같은 내용이 公然して 實施된 것을 말

하여 發明의 내용이 不特定多數人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거나 아니면 不特定多數人이 그것을 使用하고 있는 狀態에 놓여진 것인 바, 이를테면 어느 特定한 會社나 研究所의 담당자 몇 명 즉 特定한 人物만이 알고 있거나 아니면 特定한 몇 사람만이 그것을 使用하고 있는 것은 公知公用이라고 보아주지 않기 때문에 비록 어떠한 發明內容이 그 出願前에 特定한 小數人에게 알려졌거나 아니면 特定한 小數人이 使用하고 있더라도 이로 인하여 新規性은 상실되지 않는다.

2) 國內에서 頒布된 刊行物에 기재된 것

이는 特許出願前에 發明의 内容이 國內에서 頒布된 刊行物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를 말하는 바 여기서 國內에서 頒布된 刊行物이라 함은 政府나 公共機關이 發行한 刊行物, 各種 定期刊行物, 單行本 또는 個人的 著書 등이 포함될 것이고 發行日字나 發行處 또는 配付處 등이 不明한 刊行物 등이나 特定機關 또는 特定人만이 所持할 수 있는 刊行物 즉 政府나 公共機關의 秘密標識이 있거나 特別取扱, 對外秘로 分類된 것 또는 社內限으로 配付處가 제한되어 明示된 刊行物 등에 기재된 것도 新規性은 상실되지 않을 것이다.

즉 國內에서 頒布된 刊行物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보아서 不特定多數人이 구독 또는 열람할 수 있는 각종 刊行物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國外에서 반포된 刊行物

이는 特許出願前에 外國에서 頒布된 刊行物에 기재된 것으로서 外國에서 頒布된 刊行物의 定義(特許法 第6條 第1項 第2號但書, 特許法施行令 第2條)는 다음과 같다.

條約, 協定 또는 法律에 의하여 大韓民國國民에게 自國에의 住所나 營業所의 有無에 不拘하고 特許에 관한 權利를 허용하는 國家에서 頒布된;

- ① 政府가 發行한 刊行物
- ② 教育機關이 發行한 刊行物
- ③ 公共研究機關이 發行한 刊行物
- ④ 公認學術團體가 發行한 刊行物 또는 研究發表文
- ⑤ 國際機構가 發行한 刊行物

⑥ 上記 以外의 定期刊行物 또는 個人的 著書 등인 바,

여기에는 特定會社에서 發行하는 팜플렛이나 商品캐탈로그類 등과 私設機關이 不定期의으로 刊行하는 刊行物과 商品廣告文 등은 特別히 立証되지 않는 한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앞에 열거한 事由에 해당되어 新規性을 상실하게 된 행위자체가 特許法 第7條 第1項에 해당되는 때에는 新規性 상실에 해당되는 날로부터 6個月以內에 特許出願을 하면 그 發明에 대해서는 新規性을 擬制해 준다.

한편 위에 열거한 각 類形別로 新規性이 상실되는 時點을 다음과 같이 定義할 수 있다.

1) 國內公知·公用

어떠한 發明(技術內容)이 不特定多數人에게 노출되는 狀態에 놓여진 순간(그러나 特許出願時は 時·分·秒의 單位가 아닌 日을 時의 最小單位로 規定하고 있다) 그 기술내용은 新規性이 상실된다. 즉 어떤 技術內容이 대중앞에 公表되거나 展示되는 경우이며 또한 不特定多數人이 볼 수 있는 狀態下에서, 公然히 사용될 때에도 新規性이喪失된다.

즉 國內 公知·公用의 경우는 그러한 公知·公用의 사실이 일어난 場所가 서울이든 울릉도이든 상관없이 大韓民國領域內이면 足하나 특수한 경우 고립된 도서지방이라든가 아니면 일반인의出入이 제한된 特定地域內에서의 公知·公用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兵營이라든지 特殊研究所 또는 조폐공사와 같은 特定의 施設에서 公知·公用된 사실은 그러한 사실이 不特定多數人이 自由롭게出入할 수 있는 一般地域으로 옮겨진 時點에서야 비로소 新規性이 상실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國內에서 頒布된 刊行物

國內에서 頒布된 刊行物은 國內에서 發行되어 頒布된 刊行物과 國外에서 發行되어 頒布된 후 일정기간이 지나서 國내에 다시 頒布되는 두 가지의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① 國內에서 發行되어 頒布된 刊行物

刊行物自體에 發行日이 明記된 것은 일반적으로 發行日을 頒布日로 간주해 주므로 刊行物의

出版日에 新規性이 상실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發行日字가 明示되지 않은 刊行物은 이려한 刊行物이 公共圖書館이나 書店 등에 입수된 日字에 頒布되는 것으로 유추하고 있다.

② 國外에서 發行되어 國內에 頒布되는 刊行物

國內에서 발행된 刊行物과는 달리 發行日字는 문제시되지 않으며 문제가 되는 것은 國內에入手된 日字이며 國內에入手된 日字는 空港이나 港口에 貨物이 到着한 때가 아니고 個別 刊行物이 不特定多數人이 볼 수 있는 狀態에 놓여진 時點 즉 公共圖書館이나 KORSTIC, 特許廳資料室 또는 一般書店에 반입된 日時를 기준으로 하며 어떤 特定業體가 商品캐털로그나 單行本 등을 外部에 노출되지 않게 보관하는 狀態에 놓여진 것은 國內에서 頒布될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이다.

3) 國外에서 頒布된 刊行物

이는 條約國內에서 發行되어 頒布된 刊行物과 非條約國內에서 發行頒布된 후 다시 條約國內로流入되어 再頒布된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① 條約國內에서 일정한 要件(特許法施行令 第2條에 의거한)을 갖춘 刊行物은 그 發行日字에 그 나라에서 頒布된 것으로 간주해 주므로 그 頒布의 限界 등은 國內에서 發行된 刊行物이 國내에서 頒布되는 것과 大同小異할 것이다.

② 非條約國內에서 發行頒布된 후 다시 韓國내가 아닌 條約國內에 頒布된 경우에는 非條約國內에서 發行된 刊行物이므로 特許法施行令 第2條가 규정한 要件을 갖추지 못하므로 現行法上 그 刊行物이 國내에 반입되어 再頒布되지 않는 한 新規性判斷에 하등 참작될 바 없으나 이 경우 新規性이 상실되는 時點은 최초의 非條約國內에서 發行 또는 頒布된 日字가 아닌 條約國내에 반입되어 再頒布된 時點에서 新規性이喪失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바 現行法上 非條約國家에서 發行된 刊行物은 그것이 國내에서 頒布되지 않는 한 New規性喪失의 事由로 삼을 수는 없는 것이다.

3.2 進歩性 調査

進歩性이라 하면 技術의 非容易性 즉 이미 알려진 技術로부터 얼마만큼 進步發展했느냐에 관한 것은 特許法 第6條2項에는 「特許出願前에 그發明이 屬하는 技術의 分野에서 通常의 知識을 가진 者가 New規性喪失事由에 해당된 사실로부터 容易하게 發明할 수 있는 것일 때에는 그發明은 New規性喪失의 여부에도 불구하고 特許를 받을 수 없다」고 規定하고 있어서 進歩性을 沢害하는 事由는 出願前 國내에서 公知·公用된 사실이나 國내 또는 特定外國에서 頒布된 一定한 刊行物에 게재된 技術內容에 의하여 당해분야에서 通常의 技術的 知識을 가진 者가 용이하게 즉 熟考하지 않고도 쉽사리 導出해 낼 수 있을 정도의 技術的 創作(즉 發明)이라고 認定되는 것은 비록 出願된 發明이 New規性을 상실하지 않았더라도 特許를 許與하지 않은 것으로서 特許要件속에 New規性外에 이 進歩性을 포함시킨 이유는 종래에 알려진 技術內容보다 그다지 發展되지 않은 技術內容에 對世의인 效力이 있는 獨點排他的인 權利를 부여함에 신중을 기하려는 입장으로서 特許制度란 特定한 發明者에게 特許權이라는 일정한 條件下의 獨點權을 부여하는 대신 그 發明內容을 社會一般에게 公開하여 당해분야의 技術開發을 촉진하여 技術革新에 의한 產業社會發展을 유도하려는 發明保護制度의 취지에 입각한 제도로서 국가산업발달에의 寄與度가 낮은 용이한 發明은 보호할 가치가 적기 때문이다.

進歩性喪失의 時點은前述한 New規性喪失의 時點에 있어서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出願日을 基準으로 하여 出願한 날 以前에 公知·公用되었거나 國内外에서 頒布된 刊行物에 기재된 사실을 기준으로 한다.

4. 特許審判에 있어서 特許情報의 利用

特許明細書의 기재사항을 個別的으로 분리하여 볼 때 그 技術事像中的 일부에 비록 公知·公用된 사실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들의 体系的인 結合에 의하여 그들이 가지고 있는 技術的效果의 總合以上의 새로운 作用效果가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New規性이 있다고 간주하고 있다.

그러므로 特許審判에 特許情報資料를 引用할 경우 發明을 構成하는 個別技術하나하나에 대한 新規性 判斷 등도 重要하지만 이들의 結合에 의한 總合的 效果에 대해서도 特許要件 등을 檢討해 봄이 바람직하다.

4.1 特許無效審判

特許의 無效審判請求事由中 新規性 및 進歩性喪失을 理由로 하는 경우가 가장 많으며 新規性이나 進歩性을 調查하는 것은 곧 特許情報を 調査하는 것인데 無效審判請求理由에서 내세운 증거가 國內公知·公用 또는 國內에서 頒布된 刊行物이나 아니면 國外(條約國)에서 頒布된 刊行物이나에 따라서 提訴期間 및 頒布日字의 立証 및 증거제출方法이 다를 수 있는데 國내에서 頒布된 刊行物을 引用할 경우에는 提訴期間 적용을 받지 않고 國내에서 頒布된 日字만의 立証으로도 충분하나 國外에서 頒布된 刊行物을 引用하는 경우는 提訴期間의 적용을 받는 대신 國내뿐만 아니라 條約國內에서 頒布된 刊行物까지를 引用할 수 있어서 폭넓은 特許情報調査가 可能하므로 無效審判을 請求하는 側의 입장이 유리할 때가 많다(新規性 및 進歩性 調査는 特許出願에 있어서의 特許情報의 活用참조).

4.2 無效審判과 訂正許可審判

「新規性」 상실을 이유로 하는 無效審判을 請求당한 特許權者는 자기의 特許權中 公知部分을 請求範圍에서 삭제하더라도 잔여부분이 特許出願當時에 獨立하여 新規의 發明으로 간주되는 경우에 한하여 편법으로 訂正許可審判을 따로 請求하여 이에 대항할 수 있는 길이 있다.

無效審判의 被請求人인 特許權者는 자기의 特許權에 대하여 相對方이 없는 查定係의 審判인

訂正許可審判을 별도로 請求하여 無效審判이 繫屬되고 있는 동안 公知의 部分을 삭제한 잔여부분만으로 特許內容을 訂正하는 訂正許可가 확정되면 當時의 無效審判의 請求人側은 請求의 理由가 없어지므로 無效審判의 被請求人인 特許權者에게 유리한 審決이 되어 公知된 部分을 제외한 잔여부분이라도 權利를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을 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特許法 第148條에 의한 審判繫屬中의 訴訟(또는 地番判)節次의 中止規程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4.3 權利範圍 確認審判

特許請求範圍에는 기재되었더라도 公知部分을 포함한 特許權에 있어서는 特許權의 效力이 公知部分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判例(大法院事件 63 후 45號 實用新案權利範圍確認)에 입각하여 경쟁관계에 있는 他人의 特許權中 公知部分을 찾아내서 公知部分에는 特許權의 效力이 미치지 않음을 確認받아 相對方 特許權을 無力化시킬 수도 있다.

5. 結語

企業이 特許管理를 함에 있어서 特許情報管理活動에 의하여 國내 또는 國外에서 頒布되는 刊行物을 끊임없이 追跡檢索함으로써 이렇게 얻어진 有用한 特許情報を 特許出願이나 異議申請 등에 利用하여 他權利를 無力化하는 한편 自己의 特許權을 방위하여 相對적으로 자기의 特許權을 강하게 유지관리할 수 있는 바 이에는 적합한 特許情報を 特許關係諸法規에 알맞게 적용시키는 숙련된 技術의 蓄蓄을 받아야 함은 물론이다.